제301회 정례회 교 육 위 원 회

>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·학생 행복 조례안 (서윤기 의원 대표발의)2311

제 안 설 명 서

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서 윤 기 (관악 제2선거구, 더불어민주당, 기획경제위원회) □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,

그리고 김용연, 전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, 동료 위원 여러분!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윤기 의원입니다.

- □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'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·학생 행복 조례안'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- □ 한 국가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시민의 행복으로부터 출발 한다고 할 수 있음에도 그 동안 시민행복의 가치에 대한 진지한 고려와 반성 없이 관성적으로 공공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함으로써 헌법이 천명한 시민의 행복추구에 대한 권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왔습니다.
- 이에 행복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, 학생과 학교의 구성원인 교직원 등의 행복 중심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, 학생 및 학교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행복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학교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□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,

학교·학생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, 학교·학생행복지수, 안 제10조에 서울시교육청 학교·학생행복위원회의 설치하도록 하며, 학교·학생행복영향평가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.

□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! 기존의 관성적인 교육정책에서 벗어나, 교육정책 속에서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행복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, 학생과 학교의 구성원인 교직원 등의 행복 중심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가 필요합니다. 이를 위해서는 본 조례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, 본 의원의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,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